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관세변동 및 실제 적용관세

- 한-아세안 FTA 발효('07.6월)에 따라 '10년 1.1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
- 일반품목군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는 '10년부터, 베트남은 '16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8년부터 모든 품목이 관세 철폐
 - 민감품목군(민감, 초민감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입 관세유지
-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어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아세안 지역 수출시 현지 수입파트너를 통해 정확한 세율 파악 후 수출진행 필요
- ※ 상호대응세율제도 : FTA 체결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우리나라 민감품목군 중 해당 과실류 목록
 - * 싱가포르 관세 0%, 말레이시아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 유지

HS-code	품 목 명	한국에서 수입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한국에서 수출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상호대응세율제도 적용시 국가별 수입세율*(부가세 제외)		
				태 국 (WTO 협정세율)	베트남 (실제적용세율)	인도네시아
민 감	태국, 인도네시아 : '12.1.1일까지 20%로 인하, '16.1.1일까지 0~5%로 인하 베트남 : '17.1.1일까지 20%로 인하, '21.1.1일까지 0~5%로 인하					
0806200000	포 도 (건조)	21	0	30	17	5
0810100000	초본류딸기 (신선)	45	0	40	15	5
0810901000	감 (신선)	50	0	40	30	5
0811100000	초본류딸기 (냉동)	30	0	40	30	5
초민감(A그룹)	태국, 인도네시아 : '16.1.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베트남 : '21.1.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0808100000	사과 (신선)	45	0	10	15	5
0808201000	배 (신선)	45	0	30	15(18)	5
초민감(B그룹)	태국, 인도네시아 : '16.1.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베트남 : '21.1.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0806100000	포 도 (신선)	45	0	30	15(19)	5
0809300000	복숭아 (신선)	45	0	40	20	5
0810902000	단 감 (신선)	45	0	40	30	5
0813300000	사 과 (건조)	45	0	10	30	5
0813401000	감 (건조)	50	0	40	30	5
0813409000	기타과실 (건조)	45	0	40	30	(미조사)
초민감(E그룹)	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50	0	40	30	25

※ 국가별 수입관세율은 태국 정부 및 현지 운송통관사를 통해 조사된 세율이며 실제 적용 상호대응세율은 변동 가능